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45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군수

3. [redacted]시장

4. [redacted]군수

5. [redacted]시장

6.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32,075,260원의 부과처분 중 30,98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5. 한 재산세 3,784,330원의 부과처분 중 3,634,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12. 한 재산세 3,768,340원의 부과처분 중 3,618,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4. 한 재산세 2,973,070원의 부과처분 중 2,855,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2,800,210원의 부과처분 중 2,68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15. 한 재산세 689,560원의 부과처분 중 662,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경감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심판결정서는 2015. 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처분[1]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윤아영

판사 정우용

1) 다만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에서 원고는 2,855,180원을 초과하는 부분(117,890원)에 대해서 불복하였으나, 실제로는 117,880원이 감액(남은 금액 2,855,190원)되어 이 부분(1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10원 미만 절사를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계산상의 차이로 보이고[1원 단위 절사 전 재산세 부과금액(2,973,07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원인에 기재한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한 후 1원 단위 절사를 하면 2,855,190원이 된다]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